2010년 지방교부세제도의 운용방향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장
박 재 민

Ⅰ. 서 언

글로벌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2009년은 중앙과 지방이 모두 재정운용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였다. 중앙정부는 감추경을 통해 세입부분은 축소시킨 반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분야의 지출을 확대하는 등 경기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고, 지방 역시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지방세의 주축인 거래세수가 급감하는 등 세입부분은 크게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재정 조기집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2009년은 중앙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른 내국세 감소, 종부세 축소 등으로 전체적인 규모가 예상보다 작아 지방교부세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 정부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서민생활과 복지분야의 지출을 보장하는 한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의 노력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였다는 점에서 지방교부세의 중요성과 의미는 그 어느 해 보다 부각되었던 것 같다. 특히, 지방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서 교부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의 기반이라는 지방교부세의 의미와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교부세율은 현행 19.24%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지방교부세가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다시 한번 실감

할 수 있었던 한 해였다.

2010년에는 소득세 최고구간의 세율 인하가 2년간 유보되는 등 내국세가 증가하면서 2009년보다 교부세 규모가 소폭이나마 확대되어 지방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지방정부의 효율적 예산운용을 독려하는 역할을 지방교부세가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바, 지방정부의 재원보장 기능이라는 교부세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세제도의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2010년 지방교부세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교부세의 운용방향을 제시해 본다.

Ⅱ. 지방교부세제도 개요

1. 지방교부세의 종류

가. 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행정수행경비의 충당부족분을 보전하는 일반재원으로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재정부족액)을 기초로 교부하는 재정부족액 보전분과 지방양여금법 폐지전에 이미 사업이 착수되어 시행중인 지방양여금 도로사업 재원인 도로사업 보전분(2014년까지 한시적 운영)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보통교부세의 산정 및 배분방법을 보면, 재정부족액 보전분의 경우 공식적인 통계, 객관성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방식에 따라 산정하여 배정하게 되며, 도로사업 보전분의 경우는 시행중인 공사의 잔여사업비를 기준으로 배분하게 된다.

나.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는 객관성·통일성을 중시하는 보통교부세의 산정과정상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획일성과 시기적인 이유로 인해 반영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특별히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로서,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이나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통교부세의 기능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전체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따라 2005년부터 교부대상 수요항목이

시책사업·지역현안·재해대책·지역개발·특정현안의 5개 항목에서 지역현안·재해대책의 2개 항목으로 축소되고 재원규모도 지방교부세의 9.09%에서 4%로 대폭 축소되어 운영하여 오던 중 2009년부터 시책수요를 신설 운영하고 있다.

다. 분권교부세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금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고보조 149개 사업(9,581억원)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이양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해 주기 위해 '05년에 분권교부세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당초 200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2010년도 이후에는 보통교부세에 통합할 예정이었으나,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과 연계하여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 지방의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2014년까지 연장 운영키로 결론짓고 지난 1.1일자로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였다.

라. 부동산교부세

부동산교부세는 '04년말에 지방세로만 운영되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면서 '05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그 징수세액 전액을 부동산교부금으로 행정안전부 지방교부금예산으로 편성하여 자치단체에 일반재원으로 전액 교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009년까지 부동산교부세는 재산세 감소분(시도 및 시군구 귀속분) 및 거래세 감소분 (시도 귀속분) 보전에 먼저 사용되고, 남는 재원을 '균형재원'으로 시군구(제주특별자치도 포함)에 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0년부터는 세수 감소분 보전을 폐지하고 전액 균형재원으로 활용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이는 금년부터 도입된 지방소비세가 시·도세 형태로 도입됨에 따라 시·군·구의 재정보전과 재원형평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2. 지방교부세의 규모

2010년도 지방교부세 규모는 총 27조3,920억원으로 2009년도 추경예산대비 3.1%(8,235억원)이 늘어난 규모이다. 이 가운데 법정분은 26조3,459억원으로 2009년도 대비 5.0%(1조2,656억원)이 늘어난 반면 부동산교부세는 1조461억원으로 2009년 대

비 29.7%(4,421억원)가 줄었다.(〈표1〉, 〈표2〉, 〈표3〉 참조)

〈표1〉 2010년도 지방교부세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국세 대비율	'09예산(A)	'10예산(B)	증 감 (B-A)	증감율
법정분 합계	19.24%	**25,080,206**	**26,345,851**	**1,265,645**	**5.0**
보통교부세	17.59%	**22,934,679**	**24,090,337**	**1,155,658**	**5.0**
재정부족액보전	16.97%	**22,084,679**	**23,240,337**	**1,155,658**	**5.2**
도로보전분	0.62%	**850,000**	**850,000**	-	
특별교부세	0.71%	**920,195**	**968,347**	**48,152**	**5.2**
분권교부세	0.94%	**1,225,332**	**1,287,167**	**61,835**	**5.0**
내 국 세	'10 추정액	**130,354,500**	**136,932,700**	**6,578,200**	**5.0**
*부동산교부세	종부세 전액	1,488,200	1,046,100	△442,100	△29.7

〈표2〉 2010년도 특별교부세 재원규모 및 구성

(단위 : 억원)

구 분	비 율	규 모	비 고
총 계		**9,683**	**'09년 9,202억원**
지역현안수요	30%	2,905	· 자치단체의 지역현안사업 ·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재정지원
시책수요	20%	1,937	· 국가적 장려사업 등 지원 · 전국체전 등 국가적 행사지원
재해대책수요	50%	4,841	· 응급복구, 항구복구 및 재해예방 사업 재원보전
우수단체 재정지원	재해대책 수요잉여분		· 행정·재정실적 우수자치단체

※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9조의2 (특별교부세 배분기준)

〈표3〉 연도별 종부세 및 자치단체 교부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종부세 규 모	예산액	배 분 액			종부세 징수액
			소 계	세수감소분	균형재원	
2005	6,518	6,513	3,930	3,930	-	3,930[1]
2006	17,273	10,200	10,200	8,667	1,533	13,275
2007	28,560	18,892	18,892	9,971	8,921	24,143
2008	33,800[2]	31,770	23,602[3]	7,697	15,905	26,453
2009	14,882	33,482[4]	31,327	19,027	12,300	12,727

[1] 징수비용 487억이 공제된 금액임(징수비용은 '05년만 공제)

[2] 헌재의 '세대별 합산규정' 위헌결정전 추정규모이며, 실제 부과액은 28,803억임

[3] '08년 예산과 별도로 세계잉여금에서 지급된 '07년 정산분 5,252억은 제외함

[4] '09년 예산액은 목적 예비비 18,600억원을 포함한 금액임

Ⅲ. 2010 지방교부세제도 운용 방향

1. 보통교부세 운용방향

가.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보통교부세는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준재정수요액	-	기준재정수입액	=	재정부족액	≒ 보통교부세
(4개측정항목·16개세항목별 기초수요 + 보정수요 ± 수요자체노력)		(보통세의 80%의 기초수입 + 보정수입±수입자체노력)			↑ (조정율 적용)

2010년도 기준재정수요액은 총67조 7,540억원, 기준재정수입액은 총41조 1,426억원으로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하는 불교부단체를 제외한 교부단

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은 총54조 9,139억원, 기준재정수입액은 총27조 5,674억원으로 재정부족액 총액은 27조 3,465억원이다. 자치단체별 재정부족액에 2010년도 조정율(82.4%)[1]을 곱한 금액이 각 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액이 된다. 〈표4 참조〉

2010년도 보통교부세 23조 2,403억원의(자치단체 재정부족 보전분) 배분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은 지방세수가 많아 교부세가 지원되지 않는 불교부단체가 되었고, 부산광역시 등 6개 광역시는 평균 3,555억원, 경기, 강원 등 9개도는 평균 4,731억원이 지원되었다.

75개 市중에서 수원, 성남, 과천, 고양, 용인, 화성, 창원시가 재정여건이 좋아 불교부단체가 되었으며 나머지 68개 市는 평균 1,189억원, 86개 郡은 평균 1,019억원의 보통교부세를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 2010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단위 : 억원)

구 분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재정부족액	보통교부세
계	**549,139** (677,539)	**275,674** (411,426)	**273,465**	**232,403**
서 울	(98,949)	(100,056)	(-1,107)	-
광 역 시 분	102,617 (102,617)	76,681 (76,681)	25,935	21,331
도 분	124,058 (124,058)	80,881 (80,881)	43,177	35,610
시 분	186,629 (216,081)	88,529 (124,225)	98,101	80,868
군 분	135,835 (135,835)	29,583 (29,583)	106,252	87,622
제주특별자치도	정액교부	-	-	6,972

※ ( )내는 불교부단체 포함분임.

나. 보통교부세 산정 개선사항

2010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첫째,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시책 실행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요를 신설·확대하였고, 둘째, 자치단체의 건

1) 조정율(%) = (보통교부세÷재정부족액)×100

전한 재정운영 및 경쟁을 통한 성과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자체노력 반영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셋째 행정환경 변화와 실질적인 재정수요를 능동적·선제적으로 보강하였고, 끝으로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지역에 대한 지역균형수요 산식을 일원화 하는 등 산정방식을 간소화 하였다.

1) '저탄소 녹색성장 ' 등 국가시책 실행력 제고

① 녹색성장 수요 보강

녹색생활공간 및 녹색 교통망(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 구축 실적을 적용한 자전거도로 인프라수요를 신설하여 총 159억원을 수요에 반영하였고

태양열·태양광·바이오·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지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별 신재생에너지 산업관련 투자노력을 반영한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저탄소에너지 중심의 친환경차 개발·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감면한 하이브리드카 취·등록세의 일정률을 보정하는 수요를 신설하였다.

② 지역경제 활성화 수요 강화

기업유치 및 지원의 경쟁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업체 증가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자체노력 반영률을 100%에서 150%로 확대하여 총 419억원을 반영하였고

도심지역내 개별입지 공장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보정 수요를 신설하여 총 72억원을 반영하여 관련 재정수가 많은 도시지역에 지원 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이자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기집행 시책에 부응하는 단체가 오히려 불리한 산정이 이루어 질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경상세외수입 확충 자체노력 산정시 이자수입은 제외하였다.

2) 건전재정 및 성과창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에 의한 세입증대 및 세출절감 등을 반영하는 자체노력 항목을 보강·확대하여 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촉진과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먼저, 전반적인 내수경제 침체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세입증대 분야 자체노력 항목(징수율제고, 세외수입확충, 체납액축소)의 반영률을 100%에서 120%로 확대하였고

무분별·중복적인 행사·축제로 인한 낭비성 예산절감을 유도하기 위한「행사·축제성 예산운영」항목을 신설하여 총 408억원(인센티브 147억원, 페널티 346억원)을 반영하였고, 기존 운영하고 있는 건전예산운영 자체노력에 있어 전년대비 증감률을 추가하여 총 3,122억원(인센티브 1,378, 페널티 1,744억원)을 반영하였다.

이렇게 반영된 예산절감 등 재정수요부문과 세입확충 등 재정수입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반영 규모는 총 2조 8,286억원으로 종전(2009년도)의 인센티브 반영액 총2조 993억원에 비해 7,292억원이 늘어났다.

3) 실질적인 재정수요의 능동적·선제적 보강

① 자치구 사회복지균형수요 보강

특·광역시 자치구의 사회복지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비 등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시 보정률을 10%에서 12%로 상향하여 총 477억원의 수요액이 증가·반영되었다.

②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간 실질 수요·수입 합리적 조정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간의 실질적인 수요·수입 반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일반재정보전금 및 시도세징수교부금의 수요·수입 반영률을 100%에서 80%로 조정하였으며, 광역 자치단체의 교육특별회계전출금 보정수요는 폐지하는 대신 관련 수입재원을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시 제외하였다.

③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따른 수입 반영 등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따른 실질적인 수입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소득·소비세수입 항목을 신설·반영하였으며

산정방식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지역에 대한 지역균형수요 산식을 일원화하고 폐광·개촉지구 및 접경지역 보정수요 산식을 해당 수요의 사업별 재원(투자비)과 관련 통계를 적용하여 회귀식으로 산정하는 방식에서 관련 통계와 단위비용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간소화 하였다.

2. 특별교부세 운용 방향

가. 운영방침

2010년도 중 특별교부세는 다음과 같은 운영방침 하에 재원별 운용기준을 적용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한다.

먼저,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안정화 사업을 중점 지원한다.

희망근로와 연계한 영세민 주거지역 환경개선, 일자리 창출 추진 우수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지원, 산업단지 진입로 조성 등 기업인프라 구축과 주차장·전통시장 등 환경개선 사업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경제위기 극복, 지역녹색 등 우리부 역점시책 추진에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 공자기금·일시차입금 이자차액 보전, 자전거 이용 활성화, G20 개최관련 거리환경 개선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재해복구는 물론 재해예방관련 사업에도 예산지원을 확대한다.

재해대책수요분은 재해 항구복구에 우선 지원하되, 여유 재원이 있을 경우 재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관련 사업에도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위법·부당한 집행사례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철저히 적용한다.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에 대한 수시 예산집행 실태 점검을 통해 잘못 집행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한 불이익(역인센티브)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다섯째, 특교세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배정내역 공개를 추진한다.

2009년도 특별교부세 시군별·사업별 세부 배정내역 등 집행실적을 2010년 3월말까지 국회(행안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나. 수요별 운용기준

1) 지역현안수요

지역현안수요는 행정구역개편수요, 지방공공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에 교부하는 수요로서 연간 재원규모는 특별교부세 총액의 30% 해당액(‘10년 2,905억원)이다.

이러한 지역현안수요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서 포착할 수 없는 행정구역개편 또는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 설치 등으로 인한 특별한 재정소요와 지방공공시설의 신설·복구·확장 등으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지원하게 되는데 자치

단체에서 지역현안사업을 건의할 경우 교부대상의 적정성, 재원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비 소요액의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다만, 각종 민간·사회단체 등에 지원하는 민간자본이전사업, 1회성·소비성 행사비, 지방의회·주민들이 반대하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업, 기타 시급하지 않는 문화·예술·체육분야의 각종 시설물 건립, 민간·사회단체의 회관 건립 등은 가급적 지원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금년도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배정하되, 년 4회 정도 정기배정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며, 교부기준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효과 등을 고려하여 엄격한 심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배정이 되도록 집행할 것이다.

2) 시책수요

시책수요는 2009년에 새로 신설된 수요로서 국가장려사업이나 지역역점시책사업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하게 되는데 연간 재원규모는 특교세 총액의 20%('10년 1,937억원)이다.

세부 산정항목 및 기준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지방행정기능 강화, 행정구역 개편, 국가적 행사 등 국가적 장려사업이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또는 역점시책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지원되며, 원칙적으로 년도 초에 시책사업별로 교부하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합리적으로 조정 교부하게 된다.

금년도에는 무엇보다도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와 관련된 중앙부처 시책을 중점 선정하여 지원할 방침이며, 1/4분기내 총 재원의 80%이상을 집중 배정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3) 재해대책수요

재해대책수요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등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하게 되는데 재원규모는 특별교부세 총액의 50%('10년 4,841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크게 항구복구비와 응급복구비, 재해예방사업비로 구분 지원된다.

응급복구비는 재해로 인해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에 긴급한 재원이 소요되는 경우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며, 해당 자치단체의 신청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여 교부한다.

항구복구비는 재해복구소요액중 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이 과중한 경우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된 복구비 중 지방비소요액과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 부담기준을 기초로 하여 지방비부담분의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재해예방사업비는 자치단체가 재해예방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응급·항구복구사업의 잔여재원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지방비소요액의 일부를 지원한다.

4) 우수자치단체 재정지원제도

우수 자치단체 재정지원제도는 재해대책수요의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경우에 지방행정·재정 우수 운용 자치단체에 대해 교부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의 행정·재정분야 운용실적에 대하여 국가가 실시하는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자치단체나, 주민복지·지역경제·지역개발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자치단체, 그 밖에 국가정책의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치단체에게 지원하게 된다.

금년도에는 재해대책수요 재원의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시점(10월말 이후)에 평가결과 또는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배정하되, 평가에 의한 인센티브는 2009년도 수준 규모로 재원을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 대상 정부통합평가계획에 반영되어 평가한 시책에 한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반기 중에 평가 및 인센티브 운영계획을 사전 고지하여 자치단체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유도를 통해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국가중요시책에 대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3. 분권교부세 운용 방향

가. 분권교부세 산정

분권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방이양사업과 관련된 통계자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액, 관련부처 의견 등을 반영하여 경상적수요와 비경상적수요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여기서 산정 기초자료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확인·검증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객관성과 신뢰성을 도모하였다.

1) 경상적수요 산정

경상적수요는 경로당운영, 장애인 복지관 운영, 공공도서관 운영 등 지방이양사업 중에서 일정수준의 재정수요를 계속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고 객관적인 산식화가 가능한 92개 사업으로써 총 6,080억원 규모이며 전체 분권교부세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산정방법은 산정항목별 자치단체 예산편성 현황 분석자료와 지방이양사업 관련통계와의 상관관계를 도출한 후, 자치단체별 재정력을 반영하여 산정하였다.

2) 비경상적수요 산정

비경상적수요는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운영, 버스운송재정지원,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등 57개 사업으로써 총 6,792억원 규모이며 전체 분권교부세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비경상적수요는 일반수요와 특정수요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일반수요는 특정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34개사업 285억원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특정수요는 23개 사업 6,507억원으로 관계 중앙부처의 지원계획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였다.

나.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합리적 개편을 통한 복지수요 확충

정부에서는 지난해 지방소비세 도입 등 지방재정지원제도 현안에 대해 'package'화하여 관련부처와의 숙의를 거쳐 종합대책을 마련 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09년도 말로 운영기한이 종료되는 분권교부세에 대해서는 운영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 이양당시의 예측을 훨씬 초과하여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복지수요 확충을 위해 대상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대상사업 전반에 대한 재정분석을 실시하여 시대 상황에 뒤떨어지고 있거나 재정수요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분으로 재원을 이전하는 등 합리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재정조정기능 강화, 산정방법의 간소화 등 분권교부세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심도있는 검토가 진행중이다.

4. 부동산교부세 운용 방향

가. 부동산교부세에서 세수감소분 보전규정 삭제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가 광역 시·도세로 도입됨에 따라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

재원을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교부세의 재원형평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세수감소분 보전규정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2010년부터는 거래세 감소분은 물론 재산세 감소분 역시 부동산교부세에서 보전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교부세 전액은 균형재원으로 활용되어 시군구에 교부하게 되었다.

나. 부동산 교부세 균형재원 교부기준 일부변경

균형재원의 교부기준은 종전의 재정여건(50%), 사회복지(25%), 지역교육(20%), 보유세규모(5%)를 유지한다. 다만, 균형재원 산정기준에 지역교육(20%) 중 초등 방과후 영어체험학습센타운영지수(10%), 초등 방과 후 보육·교육 지원수(4%)는 자치단체가 실제로 그 사업에 지원해야 만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지원하지 않은 경우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실제 지원 비율을 최소화(14% → 2.8%)하는 것으로 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8” 를 개정하였다.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별표 8”개정 내용

종전규정		현행규정	
지역교육 현안지수	6%	지역교육현안지수	6%
초등방과후 영어체험학습센타 운영지수	10%	초등방과후 영어체험교실운영지수	8%
초등방과후 보육·교육지원지수	4%	초등방과후 보육교육원지수	3.2%
		전년도 실제 설치·운영한 초등 방과 후 영어체험교실수	2%
		전년도 실제 설치·운영한 초등 방과후 보육교육 학급수	0.8%

Ⅳ. 결 언

지금까지 지방교부세제도는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와 시대상황에 부응하여 지방재정 조정제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면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지방교부세제도의 복잡성과 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

고 있으며 지방교부세의 재원보장 기능이 한편으로는 지방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는 지적도 있다. 지방재정을 운용하는 내부 관료는 물론, 교수진을 비롯한 외부 전문가들 역시 지방교부세 제도개편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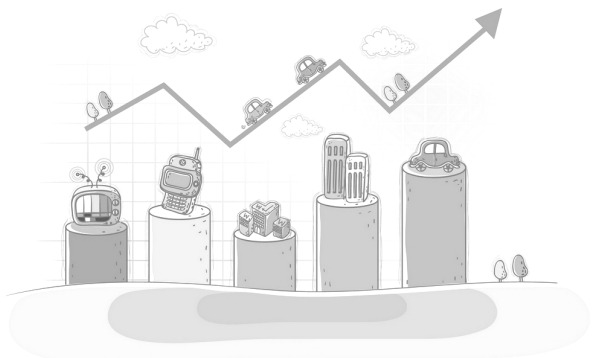
이에 대응하여 행안부는 2010년 한 해 지방교부세 제도의 전체적인 틀을 재점검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미시적으로는 지방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보통교부세의 산정방법 개선 등을 검토할 것이다.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지방의 호화청사 건립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에너지절감 등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분권교부세 운영기한이 2014년으로 연장되면서 149개 대상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할 구상을 갖고 있다. 1년간 완성될 수 없는 과제지만 부처합동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거시적으로는 수평적 재원형평화와 자치단체 재원보장이라는 지방교부세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성과창출과 경쟁의 원리를 가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방이 자체적인 세수입 증대 등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지방교부세가 감소하게 된다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학자들이 많았다. 지방정부가 재정자립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점진적이지만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의 개편안을 구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